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3-71호

##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이해승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5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gim72@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혜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 1. 제안이유

- 채식을 통해 군포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동물권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다. 채식 교육·홍보 등(안 제6조)
- 라. 채식 음식점 인증(제 8조)

## 3. 관련법령

- 해당없음

##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동물권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채식(菜食)"이란 고기류를 피하고 주로 채소, 과일, 해초 따위의 식물성 음식만 먹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할 수 있다.

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
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채식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채식 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채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관련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채식의 날 운영) ① 시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식의 날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채식 음식점 인증) ① 시장은 매년 채식 음식점을 조사하여 인증하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채식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채식 음식점의 정의, 인증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